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73
----------	-------

발의연월일 : 2024. 1. 12.

발 의 자 : 전주혜 · 우신구 · 김예지
유상범 · 조수진 · 유경준
윤창현 · 윤주경 · 이명수
홍문표 · 이태규 · 정경희
박대수 · 정희용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정치인 또는 시국사건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법관의 기피신청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며 소위 '판사쇼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됨. 더욱이 재판의 지연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들에 의해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방어전략으로도 활용되며, '지연된 판결, 지연된 정의'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3항·제4항, 제23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법원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의 이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決定으로 하여야”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하여야”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및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제415조에 따른 재항고는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② (생략)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법원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의 이전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u>
第21條(忌避申請에 對한 裁判) ① 忌避申請에 對한 裁判은 忌避 當한 法官의 所屬法院合議部에 서 <u>決定</u> 으로 하여야 한다.	第21條(忌避申請에 對한 裁判) ① ----- ----- -- <u>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23條(忌避申請棄却과 即時抗告) ①·② (생략)	第23條(忌避申請棄却과 即時抗告)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및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제415 조에 따른 재항고는 각 접수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 여야 한다.</u>